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보고회

일시 2015년 1월 19일(월) 14:00~17:0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주최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보고회

▶ 일시 : 2015년 1월 19일(월) 14:00~17: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시간	내용	발표자
14:00~14:10	사회 :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개회사 : 노 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 인사말 : 박철웅(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원장)	
14:10~14:40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안) 발표 ✧ 발표자: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40~15:25	지정 토론	
	✧ 이민희(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김정일(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 연규철(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영지원실장)	
15:25~15:40	휴 식	
15:40~16:30	종합토론	
16:40~17:00	정리 및 폐회	

목 차

■ 발 제 문 ■

- ◆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안) 발표 3
 - ❖ 발표자: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 ◆ [토론 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안)에 관한 소견 57
 - ❖ 이 민 희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 [토론 2]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에 관한 토론 65
 - ❖ 김 정 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 ◆ [토론 3]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하여 69
 - ❖ 연 규 철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영지원실장)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안) 발표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안) 발표문



I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는 1993년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로 여러 차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1999년부터는 그동안 시행해 오던 사전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선택영역을 확대하였고, 2006년부터는 검정방법, 문제 출제 및 선정, 난이도 조절 등의 문제로 전문선택영역을 폐지하고 시험과목을 축소·조정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대학졸업자의 필기시험을 면제하였다(함병수 외, 2004; 황진구, 2012).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는 검정과목 내용간의 중첩성 및 모호성, 현장실습 의무화 등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보수교육의 개선, 필기시험의 부활 등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모상현, 이진숙, 2014). 특히,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과목의 문제는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기능 및 전문성 확립에 관한 문제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에 맞는 표준교과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자격검정과목 이수자에 대하여 도입된 필기시험 면제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에 현장실습 등 전문성 강화 방안이 전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없이 필기시험만을 면제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자격검정과목의 정비, 현장실습의 실천방안 마련, 교수요목의 표준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검정과목에 대한 검토와 검정과목별 표준요목의 제시, 그리고 필기시험 면제자에 대한 현장실습 의무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의 정비,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표준교수요목 마련, 현장실습 의무화, 기타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지도사 1, 2, 3급 검정과목 검토 및 정비(안)는 1, 2, 3급 간 검정과목의 중복성 및 차별성 여부와 기존 검정과목 이외의 추가 검정과목을 검토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은 현재 1급 5과목, 2급 8과목, 3급 7과목으로 되어 있으나 3급 7과목은 2급과 동일하고 청소년복지만 추가되어 있으며, 1급의 경우에도 청소년정책론과 2, 3급의 청소년육성제도론은 유사한 과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에서의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직무에 새롭게 요청되는 검정과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의 표준교수요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술모듈 개발과 기존의 1, 2, 3급별 검정과목의 교수요목을 검토하여 검정과목별 표준교수요목(안) 제시한다.

셋째, 현장실습과목을 의무화하고 있는 유사 자격제도의 검토와 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의 자격검정과목 추가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현장실습 대상과 시간, 지도자 자격, 실습내용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필기시험 면제, 연수 등 기타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자료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문협의회 운영, 전문가의견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다.

가. 문헌·자료조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유사 자격제도의 검정과목, 현장실습 의무화 등의 검토를 위한 법령 및 관련 문헌 조사·분석하며,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의 교수요목 조사를 위한 관련 문헌 및 인터넷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문협의회 운영

연구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관련학과교수, 현장 전문가 등으로 자문협의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관련학과 교수 및 청소년현장전문가 등 22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현장실습의 필수과목화와 관련한 의견 및 기타 자격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연구결과 공개보고회 개최

청소년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자격검정과목 조정, 현장실습 과목 추가, 기타 자격제도 개선 등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에 반영한다.

4. 추진경과

- 2014년 10월 6일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용역계약 체결
- 2014년 10월 10일 : 착수계 제출
- 2014년 11월 3일 : 1차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청소년관련학과 교수 등 7인)
 -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
- 2014년 11월 18일 : 2차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청소년관련학과 교수 등 7인)
 -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초안 마련



- 2014년 11월 24일 : 중간보고회 개최
- 2014년 11월 28일 ~ 12월 12일 :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현장전문가 등 150명)
- 2014년 12월 29일 : 3차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청소년관련학과 교수, 현장전문가 등 11인)
- 설문조사 결과 등 검토를 통해 청소년지도사 자격제고 개선(안) 수정
- 2015년 1월 19일 :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보고회 개최
- 2015년 1월 20일~1월 23일 : 공개보고회 결과 반영
- 2015년 1월 30일 : 최종보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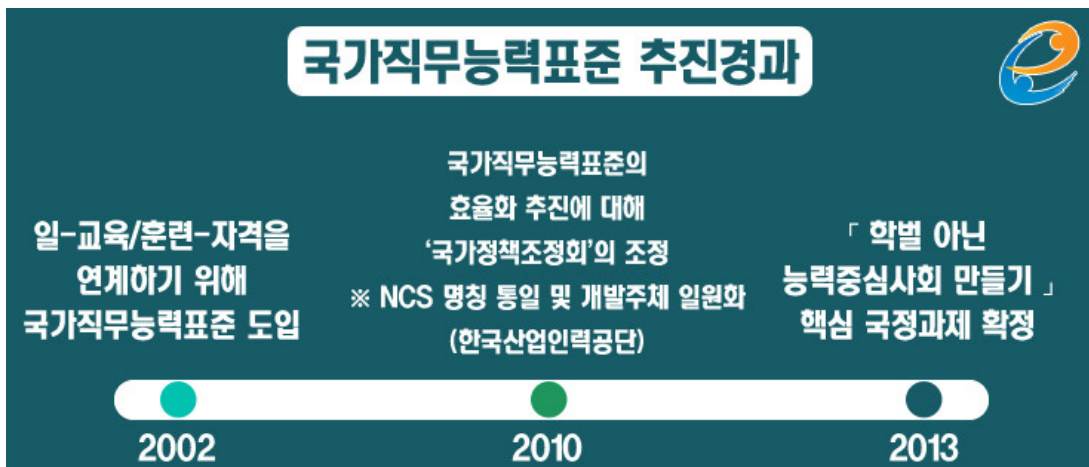
II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과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변화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의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 한 것을 말한다”(자격기본법, 제2조 제2호).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개선하여야 하며”(자격기본법, 제5조 1항),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자격기본법 제5조 3항).

2002년부터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NCS사업 효율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고, NCS 명칭을 통일하고 개발주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2013년에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의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출처 :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블로그). <http://upgrade-u.tistory.com/2953?top3>

(그림 II-1) 국가직무능력표준 추진경과



2.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에 의하면, 청소년지도는 소분류(사회복지·종교(대분류)-사회복지(중분류)-청소년지도(소분류)-청소년활동(세분류))에 해당하는데, 직업 또는 직장 내에서 자신의 전문분야 내지 전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하나의 직업으로서 경력개발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송민정, 2014).

2013년도에 청소년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학과 교수 등의 청소년전문가와 (사)한국직업상담협회가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청소년지도 표준개발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의 직무, 능력단위별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별 세부내용, 활용패키지 등을 개발한 바 있다(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상담협회, 2013).

2013년에 개발한 청소년지도 표준에 의하면, 청소년직무는 “청소년사업을 기획하고 홍보하며,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자원관리, 인증관리, 행정관리, 네트워크관리, 정보관리 등을 통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능력단위¹⁾는 총 16개로 각 능력단위별로 요구되는 직업기초역량이 작성되었으며, 능력단위 요소는 직능수준에 따라 4수준~8수준까지로 구분하고 있다(송민정, 2014; 모상현, 이진숙, 2014).

표 II-1 청소년지도 능력단위

능력단위	수준	능력단위	수준	능력단위	수준	능력단위	수준
사업기획	7	청소년프로그램개발	5	청소년프로그램실행	5	청소년프로그램 평가	5
자원봉사활동 운영	5	청소년활동인증관리	5	청소년자치활동운영	5	청소년생활지도	4
청소년기관행정지원	6	네트워크구축 운영	6	청소년활동정보관리	4	청소년활동안전·위생관리	5
교육훈련	6	청소년권익증진활동 지원	5	청소년현장실습지도	5	청소년조사연구	7

1) 능력단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상 세분류의 하위단위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본구성요소에 해당하며,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정의, 능력단위요소,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상담협회, 2013).

산업현장 경험을 기준으로 4수준은 청소년지도사 3급,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을 요구하며 사업운영실무자/사원, 대리, 주임, 간사 등의 직책으로 청소년생활지도, 청소년활동 정보관리 등이 해당된다. 5수준은 청소년지도사 2급,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중간관리자 급의 직책으로 청소년프로그램 관련 업무, 자원봉사, 활동안전·위생, 권인증진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수준은 석사 이상의 학력으로 실무책임자/부장, 차장 등의 직책 수행, 청소년 기관 행정 지원, 네트워크구축·운영,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7단계 이상은 박사급으로 총괄 책임자 및 운영대표자의 직책을 담당하며 사업기획, 청소년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송민경, 2014: 모상현, 이진숙, 2014).

표 II-2 NCS 청소년지도-평생경력개발 경로모형

직능 수준	자격증(청소년지도사) /학력	직책명	능력 단위
7이상 (8까지)	1급/ 박사	총괄책임자/ 본부장, 사무국장, 실장, 연구위원(선임) 등	사업기획, 청소년조사연구
		운영대표자/ 관장, 원장, 센터장, 소장, 교수, 기관장, 이사장 등	
6	1급/ 석사	실무책임자/ 부장, 차장 등	청소년기관행정지원 네트워크구축·운영 교육훈련
5	2급/ 4년제 대학	중간관리자/ 과장, 팀장, 전문연구원 등	청소년프로그램개발 청소년프로그램실행 청소년프로그램평가 자원봉사활동운영 청소년활동인증관리 청소년자치활동운영 청소년활동안전·위생관리 청소년권익증진활동지원 청소년현장실습지도
4	3급/ 전문대학	사업운영실무자/ 사원, 대리, 주임, 간사 등	청소년생활지도 청소년활동정보관리

* 송민경(2014). 청소년지도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성화 방안. 2014 청소년 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p. 22.



한편, 2014년에는 교육 및 직업훈련 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13년도에 개발한 청소년지도 능력 단위별로 학습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NCS 학습모듈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시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로, 학습모듈 목표, 학습명, 학습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그림 II-2) NCS 학습모듈 개념도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NCS 학습모듈의 개발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과 교수요목의 조정이 요청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III 청소년지도사 및 유사 자격제도 분석

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변화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는 청소년지도사 양성체제를 확립된 청소년기본법 제정과 그 이후 세 번의 개정을 통하여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93년에는 사전연수제도를 특징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처음 시행되었고, 1999년 이후에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의 개방과 전문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자격제도가 운영되었다. 2005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이후에는 전문선택영역 등의 정비와 검정과목 이수자의 필기시험 면제를 특징으로 하는 자격제도가 운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각 시기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1993년도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는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의 도입단계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또는 대학에서 청소년(지도)학과를 졸업한 후 자격검정시험을 합격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양성체계에서는 사전 이수과정 운영으로 인한 자격검정 응시기회의 제한, 이론중심의 교과 운영으로 인한 현장 기능습득의 한계 등의 문제가 있었다(조아미, 박정배, 이진숙, 2012; 모상현, 이진숙, 2014).

1999년도 개정 이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는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의 개방화와 전문선택영역의 추가를 통한 전문화 단계라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규제완화를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응시기회를 개방하기 위해 1993년 이후 시행되어 오던 사전연수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 3급 청소년지도사에게 전문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론중심의 자격검정 시험과목 운영으로 인한 현장 지도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비전문성, 검정과목의 적합성 문제, 전문선택 영역 과목의 검정방법의 부적절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조아미, 박정배, 이진숙, 2012; 모상현, 이진숙, 2014).

2005년 개정 이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는 그동안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혼란과 유사 자격 현장 종사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선택영역의 폐지와 검정과목 이수자의 필기시험 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1999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당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전문선택영역의 검정방식의 어려움, 시험문제의 변별력 및 과목 간 난이도 조절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 이 기간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은 전문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모두 필수과목만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1급 5개 과목, 2급 8개 과목, 3급 7개 과목이었다. 청소년기본법 경과규정에 의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는 대학에서 자격검정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었다(조아미, 박정배, 이진숙, 2012). 2005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당시 검정과목 이수자의 현장실습 의무화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못하며, 청소년지도사 1, 2, 3급 검정과목 간에 상호 중복되고 모호한 점들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표 III-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주요 변화

구분	1단계(1993년)	2단계(1999년 이후)	3단계(2005년 이후)
등급	1·2·3급	1·2·3급	1·2·3급
응시자격	사전연수 이수자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자격을 갖춘자
특징	• 사전연수 후 자격검정 • 졸업(수료) 후 자격검정 (청소년학과 학생)	• 자격검정 후 합격자 연수 • 응시자격의 개방 • 전문선택영역 도입 (2, 3급 13개 과목)	• 자격검정 후 합격자 연수 • 검정과목 축소·조정 • 필기시험 면제('08년시행) (전공과목 이수자)
검정 과목	• 1급 : 전공별 5과목 • 2급 : 전공별 4과목 • 3급 : 7개 과목 종합시험	• 1급 : 5과목 • 2급 : 10과목(공통필수 6, 공통선택 6 과목 중 택 3, 전문선택 13 과목 중 택 1) • 3급 : 7과목(공통필수 6, 전문선택 13과목 중 택 1)	• 1급 : 전공 5과목 • 2급 : 전공 8과목 • 3급 : 전공 7과목
연수	• 1급 : 160시간 이상 • 2급 : 120시간 이상 • 3급 : 50시간 이상 (사전연수) ※ 청소년학 전공자는 과정이수 면제	2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한계점	• 자격검정 응시기회 제한 (사전연수 수용 제한) • 현장 필요기능 습득 한계 (이론 중심 교과 운영)	• 검정과목의 과다 및 부적합 • 전문선택영역 과목의 검정 방법의 부적절 • 현장 필요기능 습득 한계 (이론 중심 교과 운영)	• 필기시험 면제자의 실습 의무화 등 전문성 강화 대책 미흡 • 1,2,3급 검정과목의 중복 및 현장직무능력 반영 미흡

* 출처 : 조아미, 박정배, 이진숙(2012). 2012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pp. 5~6와 모상현, 이진숙(2014). 청소년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p. 69를 수정·보완.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은 1993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이후 전문성 강화를 위해 1999년에 전문선택영역 과목을 도입하였으나 13개의 많은 전문선택과목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으로 폐지되고, 현재는 필수과목(1급 5과목, 2급 8과목, 3급 7과목)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Ⅲ-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구 분	과 목 명
1급 과목 (5과목)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 운영, 청소년지도자론
2급 과목 (8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복지
3급 과목 (7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문제와 보호

현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은 2, 3급의 경우에 청소년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과목이 동일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급 과목인 청소년정책론과 2, 3급 과목인 청소년육성제도론 등은 유사 과목으로 인정되고 있음(모상현, 이진숙, 2014). 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은 1, 2, 3급간 검정과목의 중복성과 모호성, 그리고 현장에서의 청소년지도사의 직무와 역할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12년에 학계전문가, 정책 및 현장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의 개선을 위해서 ‘현장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운영’, ‘자격검정과목의 중복 최소화 기본과목’, ‘공통과목, 선택과목 등의 구분’, ‘청소년지도사 자격급수에 따른 역할과 직무를 고려하여 자격검정과목을 달리하여 운영’ 등을 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조아미 외, 2012).



표 III-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선 방안

(단위 : %)

주요내용	교수	현장	연구원 공무원	전문가 전체	예비 청소년 지도자	전체
현장실습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 운영	4.45	4.50	2.67	4.32	4.24	4.28
기본과목, 공통과목, 선택과목 등의 구분	4.18	4.33	3.00	4.14	4.03	4.09
자격검정과목 중복 최소화	4.45	3.92	3.33	4.19	3.97	4.08
필수 자격검정 과목 추가	3.73	3.92	2.33	3.68	3.84	3.76
역할과 직무를 고려하여 자격검정과목을 달리 하여 운영	3.91	3.75	3.67	3.84	3.50	3.67
급수별로 자격검정과목을 동일하게 하되, 시험 수준을 달리하여 운영	3.05	2.92	4.00	3.08	3.11	3.10

* 조아미 외(2012).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p. 36.

(2) 청소년현장실습 의무화

2005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이후 필기시험 면제자의 현장실습 의무화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이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학교 82개교 중에서 20개교(24.4%)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전문대학의 경우에 1개교 조사 중 1개교가 실습하고 있었으며, 대학의 경우에는 27.1%, 사이버, 디지털, 방송통신대학 등의 경우에는 20.0%가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 전공필수과목으로 혹은 기본이수과목 등으로 하고 있으며, 이수시간의 경우에 160시간, 180시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Ⅲ-4 청소년 관련 대학의 현장실습 유무

구분	학교수(개교)	실습 학교(개교)	실습학교 비율(%)
대학원	12	1	8.3
4년제 대학	59	16	27.1
전문대학	1	1	100.0
사이버, 디지털, 방송통신대학 등	10	2	20.0
계	82	20	24.4

* 자료 : 2012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조사 결과.

한편, 2014년 6월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1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행 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에서 ‘필기시험 부활(29.7%)’ 다음으로 ‘현장실습 의무화(23.8%)’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모상현, 이진숙, 2014).

필기시험 면제자 현장실습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전공필수과목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그리고 ‘모든 자격응시자에게 현장실습 필수 도입’, ‘필기시험 면제자에게만 현장실습 의무화’ 등의 의견이 나타난 바 있다(조아미 외, 2012).

표 Ⅲ-5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과목 도입 의견

주요내용	(단위:%)					
	교수	현장	연구원 공무원	전문가 전체	예비 청소년 지도자	전체
필기시험 면제자의 경우, 현장실습을 전공필수과목으로 도입	4.45	4.50	2.67	4.32	4.24	4.28
모든 자격응시자에게 현장실습을 필수로 도입	4.18	4.33	3.00	4.14	4.03	4.09
육성업무 종가경력을 가지고 있는 응시자 외 필기시험 면제자에게만 현장실습 의무화	4.45	3.92	3.33	4.19	3.97	4.08
현장실습 도입보다는 이수학점을 늘리고 필기시험 부활	3.73	3.92	2.33	3.68	3.84	3.76

* 조아미 외(2012).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p. 41.



2014년 6월 26일~7월 11일 사이에 여성가족부 수신 공문을 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 및 2013년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응시자 배출학교 90개교에 의견조회 문서를 발송하여 조사, 13개교 회신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현장실습 과목 추가에 대해서 13개교 중 8개교(61.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 추가에 찬성한 8개교 중에서 6개교가 오프라인 학교이고, 온라인 학교는 1개교만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1개교는 학교유형 미상). 현장실습에 반대한 학교는 총 5개교이며, 이중 3개교가 온라인 학교, 2개교가 2년제 평생교육, 상담 등 관련 학교로 나타났다.

표 III-6 현장실습 과목추가에 대한 청소년학과 및 관련학과 의견

구 분		찬성		반대	
		오프라인학교	온라인	오프라인학교	온라인학교
4년제	청소년학과	3	1	-	1
	관련학과 (평생교육, 상담 등)	2		-	1
2년제	청소년학과	1	-		-
	관련학과 (평생교육, 상담 등)	-	-	2	1
학교유형 미상		1		-	-
		8개교		5개교	

2. 유사 자격제도

가. 청소년상담사

현재 청소년상담사는 1, 2, 3급으로 운영되며, 응시자격은 1급 청소년상담사의 경우에 상담 관련 분야 박사학위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후 상담 관련경력 4년 이상인 자 등이며, 3급 청소년상담사는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 관련경력 3년 이상인자 등이며, 3급 청소년상담사는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등이다(청소년기본법시행령 별표1).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자료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별표3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과목은 1급의 경우에 필수과목 3과목, 선택과목 2과목(4과목 중 2과목 선택)으로 총 5과목이고, 2급 청소년상담사의 경우에는 필수과목 4과목, 선택과목 2과목(4과목 중 2과목 선택)으로 총 6과목이며, 3급 청소년상담사의 경우에는 필수과목 4과목, 선택과목 1과목(2과목 중 1과목 선택)으로 총 5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Ⅲ-7 청소년상담사 이수과목 및 검정방법

구 분	과 목 명	검정방법
1급 과목 (5과목)	필수)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3과목) 선택)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필기시험 면접
2급 과목 (6과목)	필수)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4과목) 선택)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습상담 중 2과목	필기시험 면접
3급과목 (5과목)	필수)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4과목) 선택)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필기시험 면접

* 자료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별표4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검정방법은 1, 2, 3급 모두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은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하고, 연수 내용은 이론 강의와 실습 등으로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나. 사회복지사

현재 사회복지사도 1, 2, 3급의 3개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등급	응시자격 기준
사회복지사 1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때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등급	응시자격 기준
사회복지사 2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라.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3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2.

사회복지사의 응시자격 기준은 1급의 경우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등이고, 2급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등이며, 3급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인정자로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등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2).

사회복지사 이수과목은 대학원의 경우에 필수과목 6과목 18점 이상, 선택과목 2과목 6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이상, 선택과목 4과목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표 Ⅲ-8 사회복지사 이수과목

구 분	과 목 명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필수과목 (10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10과목 30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선택과목 (20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4과목 12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 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청소년복지사 자격검정은 1급의 경우에 3과목 필기시험으로 진행하며, 2, 3급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2).

표 Ⅲ-9 사회복지사 자격검정과목 및 검정방법

구 분	과 목 명	검정방법
1급 과목 (3과목)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필기시험

* 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2.

사회복지사에 대한 현장실습은 120시간 이상(학기중 실습 주 8시간, 방학 중 실습 1일 8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가 실습기관이 되며, 실습지도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하지만 최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1, 2, 3급을 1, 2급으로 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은 후 국가시험을 보는 것으로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추진하는(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6. 28) 등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기시험 및 현장실습의 의무화를 피하고 있다.

다.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의 경우에도 1, 2, 3급의 3개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등급	응시자격 기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자료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응시자격 기준은 1급의 경우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2급 평생교육사의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 15학점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등이며, 3급의 경우에는 대학 등에서 관련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등이다(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의 이수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정해진 과목 내에서 최소 2과목 이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사에 대한 현장실습은 4주간 필수과목으로 의무화하고 있다(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표 III -10 평생교육사 이수과목

구 분	과 목 명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과목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자료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의 자격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1 청소년지도사 및 유사 자격제도 비교

구 분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이수 과목	• 1급:필수 5과목 • 2급:필수 8과목 • 3급:필수 7과목	• 구체적 규정 없음	• 대학원 - 필수 6과목이상 - 선택 2과목이상 • 대학 - 필수 10과목이상 - 선택 4과목이상	• 필수 5과목이상 • 선택 2과목이상
시험 전형	• 검정과목전공 이수자 : 면접 • 현장경력자 : 필기, 면접 • 1급응시자:필기	• 필기, 면접	• 1급 : 필기 • 2,3급 : 무시험	• 무시험
검정 과목	• 1급:필수 5과목 • 2급:필수 8과목 • 3급:필수 7과목	• 1급:필수3, 선택2 • 2급:필수4, 선택2 • 3급:필수5, 선택1	• 1급:필수 3과목	• 없음
현장 실습	• 없음	• 없음	• 120시간이상	• 4주(160시간)
연수	• 30시간	• 100시간	• 없음	• 없음



IV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의견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2014년 11월 28일~12월 12일에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112명, 청소년지도사 117명 등 총 22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의 경우에는 e-mail로 설문지를 송부하고 전화로 설문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사의 경우에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조사기간 중에 실시한 보수교육에 참여한 청소년 지도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그림 IV-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안에 대한 1, 2, 3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개선에 대한 의견과 학점 기준, 그리고 현장실습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의견 등이었다.

구분	3급 자격검정과목	2급 자격검정과목	1급 자격검정과목
선택과목 (1~2과목)	청소년생활지도 청소년레크리에이션	청소년상담 청소년지역사회조직 청소년육성제도론 사회조사방법론 청소년교류론 청소년문제론	
필수과목 (4~6과목)	프로그램 운영론 청소년활동 기초 청소년심리(기초) 청소년문화(기초)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청소년프로그램 평가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연구방법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론
공통필수과목 (4과목)	청소년지도자론 청소년안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현장실습	

[그림 IV-1]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개선(안)

조사대상 229명 중 151명이 응답하여 65.9%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현장전문가 70.8%, 4년제 대학 교수 22.5%, 전문대학 교수 2%, 기타 4.6%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이 27.1%, 6~10년이 32.4%, 11~15년이 22.5%, 16년 이상이 17.9%로 근무경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표 IV-1 조사응답자 특성

(단위: %(빈도))

근무기관 유형	근무 경력				전체
	5년 미만	6 ~ 10년	11 ~ 15년	16년 이상	
전문대학교수	0.0(0)	3.3(1)	0.0(0)	66.7(2)	100.0(3)
4년제대학교수	11.8(4)	35.3(12)	20.6(7)	32.4(11)	100.0(34)
현장전문가	29.9(32)	32.7(35)	24.3(26)	13.1(14)	100.0(107)
기타	71.4(5)	14.3(1)	14.3(1)	0.0(0)	100.0(7)
계	27.1(41)	32.4(49)	22.5(34)	17.9(27)	100.0(151)

또한 조사응답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 상황을 살펴보면, 1급 청소년지도사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는 15.4%, 2급 청소년지도사는 57.0%, 3급 청소년지도사는 18.1%이고, 자격증이 없는 응답자는 18.1%로 나타났다. 현장전문가의 경우에 2급 청소년지도사가 69.2%로 가장 많고, 1급 청소년지도사 16.8%, 3급 청소년지도사 11.2%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교수의 경우에도 1급 청소년지도사가 12.5%, 2급 청소년지도사가 15.6%, 3급 청소년지도사가 3.1%로 나타났다.

표 IV-2 근무기관 유형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여부

(단위: %(빈도))

근무기관 유형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여부				전체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지도사	없음	
전문대학교수	33.3(1)	33.3(1)	0.0(0)	33.3(1)	100.0(3)
4년제대학교수	12.5(4)	15.6(5)	3.1(1)	68.8(22)	100.0(32)
현장전문가	16.8(18)	69.2(74)	11.2(12)	2.8(3)	100.0(107)
기타	0.0(0)	71.4(5)	14.3(1)	14.3(1)	100.0(7)
전체	15.4(23)	57.0(85)	9.4(14)	18.1(27)	100.0(149)



2. 조사결과 분석

가. 2, 3급 공통필수과목 의견

(1) 타당성 조사 결과

2, 3급 공통필수과목에 대해서 57.9%의 응답자들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청소년지도방법론(73.0%), 청소년현장실습(68.7%), 청소년지도자론(67.3%), 청소년안전론(62.6%)의 순으로 타당하다고 응답하여 각 과목별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공통필수과목 전체 의견

(단위: %(빈도))

구분	2급, 3급 공통필수과목 전체 의견					전체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공통필수과목에 대한 전체 의견	5.7(8)	10.0(14)	26.4(37)	48.6(68)	9.3(13)	100.0(140)
청소년지도자론	2.7(4)	3.3(5)	26.7(40)	43.3(65)	24.0(36)	100.0(150)
청소년지도방법론	3.4(5)	4.7(7)	18.9(28)	41.2(61)	31.8(47)	100.0(148)
청소년안전론	6.0(9)	4.0(6)	27.3(41)	37.3(56)	25.3(38)	100.0(150)
청소년현장실습	4.0(6)	4.7(7)	22.7(34)	30.7(46)	38.0(57)	100.0(150)

2, 3급 공통필수과목을 두는 것에 대한 전체 의견은 57.9%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8.6%, ‘매우 타당하다’ 9.3%), 26.4%가 보통이다, 15.7%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10.0%, ‘전혀 타당하지 않다’ 5.7%)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공통과목에 대한 타당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지도자론에 대해서는 67.3%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3.3%, ‘매우 타당하다’ 24.0%), 26.7%가 보통이다, 6.0%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3.3%, ‘전혀 타당하지 않다’ 2.7%)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방법론에 대해서는 73.0%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1.2%, ‘매우 타당하다’ 31.8%), 18.9%가 보통이다, 8.1%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4.7%, ‘전혀 타당하지 않다’

3.4%)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7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안전론에 대해서는 62.6%가 타당하다(‘타당하다’ 37.3%, ‘매우 타당하다’ 25.3%), 27.3%가 보통이다, 10.0%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4.0%, ‘전혀 타당하지 않다’ 6.0%)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6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현장실습에 대해서는 68.7%가 타당하다(‘타당하다’ 30.7%, ‘매우 타당하다’ 38.0%), 22.7%가 보통이다, 8.7%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4.7%, ‘전혀 타당하지 않다’ 4.0%)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 3급 공통필수과목에 대한 주요 의견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청소년복지,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 등을 공통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으며, 청소년지도자론과 청소년지도방법론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안전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별개의 과목으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표 IV-4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공통필수과목 기타 의견

공통필수과목	-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 청소년복지 - 청소년지역사회조직, 청소년육성제도론, 사회조사방법론 - 지도자론이나 안전관련 과목 - 청소년안전론에 대한 재검토(학문적 논의과정 없었음) - 지도자론과 지도방법론을 지도자론으로 통합하고 청소년활동을 공통필수로 - 지도자론과 지도방법론의 명확한 구분 - 3급 과정에서는 실습을 제외한 공통과목은 의미 없음. - 2년제 대학도 4년제 대학과 동일 2급 응시자격 부여
청소년지도자론	- 청소년지도자론과 청소년지도방법론을 통합 - 공통필수보다는 2급이나 1급으로 - 지도자론과 안전론을 통합하여 지도자론에 안전론 포함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자론 & 청소년지도방법론을 통합 - 2급보다는 3급의 필수과목으로
청소년안전론	- 별도의 과목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임 - 청소년지도방법론에서 독립된 chapter로 다루어야 함. - 활동과목의 주요 내용으로 삽입 - 청소년지도방법론, 혹은 청소년지도론에서 청소년생활안전 등의 명칭으로 하나의 장 정도로 다루는 것이 적절함 - 청소년활동론에 포함



	- 청소년안전론을 공통필수교과로 선정하기 위한 학계 및 실천현장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필기보다는 실기(실습)의 교과목으로 더 타당
청소년현장실습	-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실제 수요처와 인력상황을 고려해볼 때 현장의 혼란만 가중 - 2급에서만 실시 - 시험과목으로 부적합 - 1급은 현장실습이 필요 없음. - 실습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음.

나. 3급 필수과목에 대한 의견

(1) 타당성 조사 결과

3급 필수과목에 대해서 66.7%의 응답자들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청소년활동(기초)(72.9%), 청소년문화(기초)(72.7%), 청소년심리(기초)(72.0%), 청소년문제와 보호(70.9%), 프로그램운영론(68.2%)의 순으로 타당하다고 응답하여 각 과목별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청소년지도사 3급 필수과목 전체 의견

(단위: %(빈도))

구분	3급 필수과목 전체 의견					전체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3급 필수과목에 대한 전체 의견	1.4(2)	5.6(8)	26.4(38)	51.4(74)	15.3(22)	100.0(144)
프로그램 운영론	1.3(2)	2.6(4)	27.8(42)	41.7(63)	26.5(40)	100.0(151)
청소년활동(기초)	2.0(3)	2.0(3)	22.7(34)	42.7(64)	30.7(46)	100.0(150)
청소년심리(기초)	0.7(1)	4.0(6)	23.3(35)	44.7(67)	27.3(41)	100.0(150)
청소년문화(기초)	0.7(1)	3.3(5)	23.3(35)	44.0(66)	28.7(43)	100.0(150)
청소년 문제와 보호	1.3(2)	2.0(3)	25.8(39)	41.1(62)	29.8(45)	100.0(151)

3급 필수과목에 대한 전체 의견은 66.7%가 타당하다(‘타당하다’ 51.4%, ‘매우 타당하다’ 15.3%), 26.4%가 보통이다, 7.0%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5.6%, ‘전혀 타당하지 않다’ 1.4%)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필수과목에 대한 타당도는 다음과 같음. 먼저 프로그램운영론에 대해서는 68.2%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1.7%, ‘매우 타당하다’ 26.5%), 27.8%가 보통이다, 3.9%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2.6%, ‘전혀 타당하지 않다’ 1.3%)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기초)에 대해서는 72.9%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2.7%, ‘매우 타당하다’ 30.7%), 22.7%가 보통이다, 4.0%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2.0%, ‘전혀 타당하지 않다’ 2.0%)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7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심리(기초)에 대해서는 72.0%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4.7%, ‘매우 타당하다’ 27.3%), 23.3%가 보통이다, 4.7%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4.0%, ‘전혀 타당하지 않다’ 0.7%)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7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문화(기초)에 대해서는 72.7%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4.0%, ‘매우 타당하다’ 28.7%), 23.3%가 보통이다, 4.0%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3.3%, ‘전혀 타당하지 않다’ 0.7%)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7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문제와 보호에 대해서는 70.9%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1.1%, ‘매우 타당하다’ 29.8%), 25.8%가 보통이다, 3.3%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2.0%, ‘전혀 타당하지 않다’ 1.3%)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7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3급 필수과목에 대한 주요 의견

3급 필수과목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기초과목을 두어 2급 과목과 차별하여 수준을 달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초과목을 두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또한 3급 기초 과목을 통합하여 하나의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2급의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청소년프로그램 평가를 별개의 과목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에서 2급을 응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2, 3급 과목의 통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표 IV-6 청소년지도사 3급 필수과목에 대한 기타 의견

3급 필수과목	- 청소년활동을 위한 기초과목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를 ‘기초’로 해서 자격검정과목으로 세목화하는 것은 부적절. 이를 포괄하는 1개의 자격검정과목으로 줄이는 방안 모색 - 전반적으로 구성된 과목은 적절해 보이나, 3개의 기초과목을 2급 교과목과 어떻게 차별화 시킬 것인가가 관건 - 3급에서도 청소년인권과 참여에 관한 교육과정 필요 - 전문대학에서도 2급 교과과정을 통해 2급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프로그램운영론	- 청소년지도방법론과 차이가 없음. - 프로그램개발의 실행단계, 지도방법론 등과 차별성 없음. - 프로그램기획 및 운영론으로 변경 - 활동론에 포함.
청소년활동 (기초)	- 2,3급 공통필수과목으로 - 기초라는 단어는 삭제 필요 - 2급/3급 교과목에서 내용과 질적 수준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 - 청소년지도사 2급과목명과 동일하지 않게 구성 - 2급의 활동과목과 변별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용요소를 명확하게 해야 함. - 기초과목을 두고 2급에서 다시 배운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 기초보다 2급과 동일하게 3급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3급의 (기초)와 2급의 과목의 구분 경계 모호
청소년심리 (기초)	- 2,3급 공통필수과목으로 - 2급의 과목과 어떤 기준으로 (기초)과정을 설정할지가 추상적임. - 기초라는 단어는 삭제 필요 - 2급/3급 교과목에서 내용과 질적 수준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 - 2급의 활동과목과 변별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용요소를 명확하게 해야 함. - 기초과목을 두고 2급에서 다시 배운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 기초보다 2급과 동일하게 3급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3급의 (기초)와 2급의 과목의 구분 경계 모호
청소년문화 (기초)	- 2,3급 공통필수과목으로 - 2급의 과목과 어떤 기준으로 (기초)과정을 설정할지가 추상적임. - 기초라는 단어는 삭제 필요 - 2급/3급 교과목에서 내용과 질적 수준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 - 2급의 활동과목과 변별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용요소를 명확하게 해야 함. - 기초과목을 두고 2급에서 다시 배운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 기초보다 2급과 동일하게 3급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3급의 (기초)와 2급의 과목의 구분 경계 모호
청소년문제와 보호	- 2,3급 공통필수과목으로 - 청소년복지’로 명칭 변경 - 2급에서도 반드시 필요함.

다. 2급 필수과목에 대한 의견

(1) 타당성 조사 결과

2급 필수과목에 대해서 74.2%의 응답자들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청소년활동(83.1%), 청소년문화(81.2%), 청소년심리(78.3%), 청소년복지(77.9%), 청소년프로그램개발(73.8%), 청소년프로그램평가(69.1%)의 순으로 타당하다고 응답하여 각 과목별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청소년지도사 2급 필수과목에 대한 의견

(단위: %(빈도))

구분	2급 필수과목 전체 의견					전체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2급 필수과목에 대한 전체 의견	1.5(2)	3.7(5)	20.6(28)	52.9(72)	21.3(29)	100.0(136)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2.0(3)	4.0(6)	20.1(30)	41.6(62)	32.2(48)	100.0(149)
청소년프로그램 평가	3.4(5)	6.7(10)	20.8(31)	40.9(61)	28.2(42)	100.0(149)
청소년활동	0.0(0)	0.7(1)	16.2(24)	44.6(66)	38.5(57)	100.0(148)
청소년심리	0.0(0)	1.4(2)	20.3(30)	45.9(68)	32.4(48)	100.0(148)
청소년문화	0.0(0)	1.3(2)	17.4(26)	47.0(70)	34.2(51)	100.0(149)
청소년복지	0.0(0)	4.7(7)	17.4(26)	47.0(70)	30.9(46)	100.0(149)

2급 필수과목에 대한 전체 의견은 74.2%가 타당하다(‘타당하다’ 52.9%, ‘매우 타당하다’ 21.3%), 20.6%가 보통이다, 5.2%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3.7%, ‘전혀 타당하지 않다’ 1.5%)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7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필수과목에 대한 타당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는 73.8%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1.6%, ‘매우 타당하다’ 32.2%), 20.1%가 보통이다, 6.0%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4.0%, ‘전혀 타당하지 않다’ 2.0%)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7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프로그램평가에 대해서는 69.1%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0.9%, ‘매우 타당하다’



28.2%), 20.8%가 보통이다, 10.1%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6.7%, ‘전혀 타당하지 않다’ 3.4%)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에 대해서는 83.1%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4.6%, ‘매우 타당하다’ 38.5%), 16.2%가 보통이다, 4.7%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0.7%, ‘전혀 타당하지 않다’ 0.0%)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심리에 대해서는 78.3%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5.9%, ‘매우 타당하다’ 32.4%), 20.3%가 보통이다, 1.4%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1.4%, ‘전혀 타당하지 않다’ 0.0%)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약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문화에 대해서는 81.2%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7.0%, ‘매우 타당하다’ 34.2%), 17.4%가 보통이다, 1.3%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1.3%, ‘전혀 타당하지 않다’ 0.0%)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는 77.9%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7.0%, ‘매우 타당하다’ 30.9%), 17.4%가 보통이다, 4.7%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4.7%, ‘전혀 타당하지 않다’ 0.0%)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약 80%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급 필수과목에 대한 주요 의견

2급 필수과목에 대한 주요 의견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청소년프로그램평가를 기존 과목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와 같이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관련 법과 제도론(육성제도론)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인권과 참여 과목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IV-8 청소년지도사 2급 필수과목에 대한 의견

2급 필수과목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청소년프로그램 평가의 2개 과목을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 - 직무를 고려해볼 때 2급에서도 청소년인권과 참여에 관한 교육과정 필요 - 청소년육성제도론을 필수과목으로 - 청소년 법과 제도론 -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활동, 심리, 문화가 3급 과목과의 차이에 있어서 구분이 필요함.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를 합치는 것이 타당 - 직무분석에서 이 과목이 중요하다고 나오지만, 그렇게 반영하기는 어려움
청소년프로그램 평가	- 개발 및 평가의 구분은 미래적으로 필요하지만, 현행체제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음 - 기존의 과목처럼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를 그대로 유지

청소년활동	- 2,3급 공통필수과목으로
청소년심리	- 2,3급 공통필수과목으로
청소년문화	- 2,3급 공통필수과목으로
청소년복지	- 2,3급 공통필수과목으로 - 청소년상담과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선택과목이 적정

라. 1급 필수과목에 대한 의견

(1) 타당성 조사 결과

2급 필수과목에 대해서 68.1%의 응답자들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청소년기관 운영론(76.5%), 청소년정책론(73.8%), 청소년연구방법(65.8%), 청소년인권과참여(68.4%)의 순으로 타당하다고 응답하여 각 과목별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청소년지도사 1급 필수과목 전체 의견

(단위: %(빈도))

구분	1급 필수과목 전체 의견					전체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1급 필수과목에 대한 전체 의견	1.4(2)	4.3(6)	26.1(36)	47.1(65)	21.0(29)	100.0(138)
청소년연구방법	3.4(5)	3.4(5)	27.5(41)	38.3(57)	27.5(41)	100.0(149)
청소년 인권과 참여	2.0(3)	2.7(4)	26.8(40)	40.9(61)	27.5(41)	100.0(149)
청소년정책론	1.3(2)	3.4(5)	21.5(32)	36.2(54)	37.6(56)	100.0(149)
청소년 기관운영론	1.3(2)	1.3(2)	20.8(31)	35.6(53)	40.9(61)	100.0(149)

1급 필수과목에 대한 전체 의견은 68.1%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7.1%, '매우 타당하다' 21.0%), 26.1%가 보통이다, 5.7%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4.3%, '전혀 타당하지 않다' 1.4%)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약 70%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필수과목에 대한 타당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연구방법에 대해서는 65.8%가 타당하다(‘타당하다’ 38.3%, ‘매우 타당하다’ 27.5%), 27.5%가 보통이다, 6.8%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3.4%, ‘전혀 타당하지 않다’ 3.4%)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약 65%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인권과 참여에 대해서는 68.4%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0.9%, ‘매우 타당하다’ 27.5%), 26.8%가 보통이다, 4.7%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2.7%, ‘전혀 타당하지 않다’ 2.0%)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정책론에 대해서는 73.8%가 타당하다(‘타당하다’ 36.2%, ‘매우 타당하다’ 37.6%), 21.5%가 보통이다, 4.7%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3.4%, ‘전혀 타당하지 않다’ 1.3%)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70% 이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관운영론에 대해서는 76.5%가 타당하다(‘타당하다’ 35.6%, ‘매우 타당하다’ 40.9%), 20.8%가 보통이다, 2.6%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1.3%, ‘전혀 타당하지 않다’ 1.3%)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7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1급 필수과목에 대한 주요 의견

1급 필수과목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청소년연구방법론이 기관장에 필요한 과목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청소년정책론이 청소년육성제도론 등과 중복된 내용이며, 2급에 보다 적합한 과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육성론, 청소년지도감독론 등의 교과목 신설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1급 과목수가 적고 적정한 과목으로 배치되어 있어 새로운 교과목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V-10 청소년지도사 1급 필수과목 전체 의견

1급 필수과목	- 1급 과목 4과목보다 더 많이 늘려야 함. - 지도자론이나 안전관련 과목 추가 필요 - 성격이 유사한 정책론과 기관운영론을 통합 - 청소년연구방법이 1급 시험에 반드시 필요한 가에 관하여 검토 필요 - 청소년육성론 개설(청소년육성의 이념과 철학,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과목) - 청소년지도감독론 등
청소년연구방법	- 현장에 근무하는 수련시설장들에게 연구방법론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과목임. - 과목에 대한 중심 책(교재)을 찾기가 힘들.
청소년인권과 참여	- 2급의 선택과목으로 적정 - 청소년참여론으로 명칭 변경

청소년정책론	- 2급 검정과목으로 타당(현장에서 팀장급 이상에서는 청소년정책 변화와 변동에 대한 기초지식이 반드시 필요) - 정책론과 더불어 청소년관련법규 대한 이해 과목도 신설하는 방안 검토
청소년기관운영론	- 적정함 - 대부분의 기관의 장들에게 필요

마. 3급 선택과목에 대한 의견

(1) 타당성 조사 결과

3급 선택과목에 대해서 49.6%의 응답자들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청소년생활지도가 61.6%, 청소년레크리에이션이 53.0%로 나타나, 3급 선택과목에 대한 타당도가 낮으며, 특히 청소년레크리에이션 과목에 대한 타당도가 낮았다.

표 IV-11 청소년지도사 3급 선택과목 전체 의견

구분	3급 선택과목 전체 의견					전체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3급선택과목에 대한 전체 의견	1.4(2)	2.1(3)	46.9(68)	38.6(56)	11.0(16)	100.0(145)
청소년생활지도	1.3(2)	6.6(10)	30.5(46)	39.1(59)	22.5(34)	100.0(151)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2.6(4)	5.3(8)	39.1(59)	35.1(53)	17.9(27)	100.0(151)

3급 선택과목에 대한 전체 의견은 49.6%가 타당하다(‘타당하다’ 38.6%, ‘매우 타당하다’ 11.0%), 46.9%가 보통이다, 3.5%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2.1%, ‘전혀 타당하지 않다’ 1.4%)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61.6%가 타당하다(‘타당하다’ 39.1%, ‘매우 타당하다’ 22.5%), 30.5%가 보통이다, 7.9%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6.6%, ‘전혀 타당하지 않다’ 1.3%)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6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레크리에이션에 대해서는 53.0%가 타당하다(‘타당하다’ 35.1%, ‘매우 타당하다’ 17.9%), 39.1%가 보통이다, 7.9%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5.3%, ‘전혀 타당하지 않다’ 2.6%)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3급 선택과목에 대한 주요 의견

3급 선택과목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3급 선택과목으로서 청소년레크리에이션 과목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으며, 실무중심의 선택과목 추가, 청소년생활지도를 청소년상담으로 대체, 청소년교류, 청소년방과후활동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있었다.

표 IV-12 청소년지도사 3급 선택과목 전체 의견

3급 선택과목	- 3급 자격자의 수준과 역할에 대한 기본적 논의 필요 - 선택과목의 확대 - 실무중심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더 추가 - 청소년상담복지 과목이 통합 추가 - 생활지도는 필요하나 레크리에이션 불필요 - 생활 및 안전 지도' 과목으로 개설 - 청소년교류, 청소년방과후활동, 청소년활동기록과 발급 등
청소년생활지도	- 상담이 현실적 - 개별교과목으로 다루기엔 무리 - 청소년 인권, 인성, 참여로 전환 필요
청소년레크리에이션	- 생활지도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교과목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취득하는 방향이 옳음. - 청소년지도사와 레크리에이션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사의 직무와 레크리에이션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음. - 청소년 코칭관련으로 전환 필요

바. 2급 선택과목에 대한 의견

(1) 타당성 조사 결과

2급 필수과목에 대해서 60.1%의 응답자들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청소년상담(63.5%), 청소년문제론(62.9%), 청소년육성제도론(61.4%), 청소년지역사회조직론(55.4%),

사회조사방법론(55.4%)의 순으로 타당하다고 응답하여 각 과목별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청소년지도사 2급 선택과목 전체 의견

(단위: %(빈도))

구분	2급 선택과목 전체 의견					전체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2급선택과목에 대한 전체 의견	1.5(2)	5.3(7)	33.1(44)	51.1(68)	9.0(12)	100.0(133)
청소년상담	0.0(0)	2.0(3)	34.5(51)	43.9(65)	19.6(29)	100.0(148)
청소년지역사회 조직론	3.4(5)	6.1(9)	35.1(52)	37.8(56)	17.6(26)	100.0(148)
청소년 육성제도론	3.4(5)	2.7(4)	32.4(48)	40.5(60)	20.9(31)	100.0(148)
사회조사방법론	2.0(3)	4.1(6)	38.5(57)	40.5(60)	14.9(22)	100.0(148)
청소년문제론	4.1(6)	1.4(2)	31.8(47)	37.2(55)	25.7(38)	100.0(148)

2급 선택과목에 대한 전체 의견은 60.1%가 타당하다(‘타당하다’ 51.1%, ‘매우 타당하다’ 9.0%), 33.1%가 보통이다, 6.8%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5.3%, ‘전혀 타당하지 않다’ 1.5%)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에 대해서는 63.5%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3.9%, ‘매우 타당하다’ 19.6%), 34.5%가 보통이다, 2.0%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2.0%, ‘전혀 타당하지 않다’ 0.0%)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6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역사회조직론에 대해서는 55.4%가 타당하다(‘타당하다’ 37.8%, ‘매우 타당하다’ 17.6%), 35.1%가 보통이다, 9.5%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6.1%, ‘전혀 타당하지 않다’ 3.4%)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55%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육성제도론에 대해서는 61.4%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0.5%, ‘매우 타당하다’ 20.9%), 32.4%가 보통이다, 6.1%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2.7%, ‘전혀 타당하지 않다’ 3.4%)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6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조사방법론에 대해서는 55.4%가 타당하다(‘타당하다’ 40.5%, ‘매우 타당하다’ 14.9%), 38.5%가 보통이다, 6.1%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4.1%, ‘전혀 타당하지 않다’ 2.0%)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55%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문제론에 대해서는 62.9%가 타당하다(‘타당하다’ 37.2%, ‘매우 타당하다’ 25.7%), 31.8%가 보통이다, 5.5%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 1.4%, ‘전혀 타당하지 않다’ 4.1%)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6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급 선택과목에 대한 주요 의견

2급 선택과목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청소년지역사회조직론에 찬반 의견이 있으며,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역사회청소년조직론 등으로 명칭 변경 요구가 있었으며, 청소년교류론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있었다. 사회조사방법론을 연구방법론은 변경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청소년문제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V-13 청소년지도사 2급 선택과목 전체 의견

2급 선택과목	- 청소년진로개발론, 청소년부모교육론 - 선택 과목이 많음 - 지역사회조직론은 사회복지와 자격증 과목이 유사해짐. - 청소년육성제도론과 청소년문제론은 필수과목으로 - 사회조사방법론은 필요하다면 기초 과목으로 - 청소년교류론은 매우 타당한 과목임. - 청소년교류론 필요하지만,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내용이 풍부하지 않음. - 글로벌 시대에 청소년교류론은 선택과목이나 필수과목이 적정
청소년상담	- 생활지도 내에는 청소년상담의 기초가 있음 - 필수과목이어야 함
청소년지역사회조직론	- 지역사회네트워크로 명칭 변경 - 청소년과 지역사회로 명칭 변경 - 지역사회청소년조직론으로 명칭 변경 - 사회복지 교육과정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과목 정체성이 없고, 개별과목으로 다루기엔 무리 - 필수과목이어야 함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정책론과의 차이가 없음 - 청소년관련법과 제도로 확대 - 필수과목으로 변경 - 청소년인권과 참여를 대체과목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사회조사방법론	- 조사방법이 현장에서 필요성 낮음. - 청소년연구방법론으로 변경 - 필수과목으로 운영 - 프로그램 평가와 상당부분 중복
청소년문제론	- 필수과목이 적정 - 3급 '청소년문제와 보호'와 차이가 없음. - 개별과목으로 부적절 - 3급과목으로 적합. 청소년비행론 혹은 청소년 일탈 및 비행로 명칭 변경 - 현행대로 문제와 보호론으로 필수과목 - 청소년개발 혹은 청소년리더십론으로 변경

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학점기준에 대한 의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학점기준에 대해서 2, 3급 모두 3학점으로 하자는 의견이 66.3%, 2급 과목 3학점, 3급 과목 2학점으로 하자는 의견은 31.2% 등으로 3학점 기준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학점기준에 관한 의견

(단위: %(빈도))

근무기관 유형	자격검정과목 학점기준			전체
	2, 3급 과목 모두 3학점	2급 과목 3학점, 3급 과목 2학점	기타	
전문대학교수	66.7(2)	33.3(1)	0.0(0)	100.0(3)
4년제대학교수	61.8(21)	35.3(12)	2.9(1)	100.0(34)
현장전문가	69.9(58)	27.7(23)	2.4(2)	100.0(83)
기 타	40.0(2)	60.0(3)	0.0(0)	100.0(5)
전 체	66.4(83)	31.2(39)	2.4(3)	100.0(125)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학점기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3학점으로 하자는 의견의 경우에는 자격증의 전문성 강화,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교과목 연계 등이 주요한 이유였으며, 2학점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의 학사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이유로 하고 있었다.



표 IV-14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학점기준에 관한 의견

3학점 의견	- 국가자격과정으로서의 위상과 적절한 학습의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3학점으로 통일 - 2학점으로는 청소년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하기 어려움. - 2급과 3급의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3학점으로 동일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학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3학점 통일(NCS에 의하면,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하면 이를 4년제대학에서 이수과목으로 연계하여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정과목과 교육과정을 연계운영할 계획을 기본 축으로 함. 즉, 2년제 과정과 4년제의 2년동안의 과정이 거의 동일하여, 2년제에서 4년제로의 편입학을 수월하게 하고 학점인정도 매우 용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개편을 2015년부터 적용하고자 하고 있음.) - 전문대학의 경우 3학점 보다는 2학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공통필수 과목을 2급과 3급에서 한번만 수강해도 된다면 2급과 3급을 통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 과거와 달리 대학간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며 전문성의 영역에서는 최소한 필수시간의 규정이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도사의 교과목 만큼은 3학점으로 해야 할 것임 - 강의 충실도를 확보하기 위해 3학점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 2학점으로 두게 될 때 갖는 다양한 문제(동일한 학교에 두 개의 트랙이 생기는 등)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가급적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이수학점이 이루어져야 함.
2학점 의견	- 3급은 2학점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됨. - 2~3년제 대학의 학사 운영상 3학점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현장실습에 대한 의견

(1) 현장실습의 의무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찬성이 89.3%, 반대가 10.7%로 대부분 현장실습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현장실습 의무화 의견

(단위: %(빈도))

근무기관 유형	현장실습 의무화		전체
	찬성	반대	
전문대학교수	100.0(3)	0.0(0)	100.0(3)
4년제대학교수	84.8(28)	15.2(5)	100.0(33)
현장전문가	90.6(96)	9.4(10)	100.0(106)
기 타	85.7(6)	14.3(1)	100.0(7)
전 체	89.3(133)	10.7(16)	100.0(149)

(2) 현장실습 대상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현장실습 대상에 대해서는 자격검정과목 이수자가 54.4%, 면접 시험 합격자가 34.6%, 기타가 11.0%로 자격검정과목 이수자에 대한 의견이 과반수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현장실습 대상 의견

(단위: %(빈도))

근무기관 유형	현장실습 대상			전체
	자격검정과목 이수자	면접시험 합격자	기타	
전문대학교수	100.0(3)	0.0(0)	0.0(0)	100.0(3)
4년제대학교수	66.7(20)	20.0(6)	13.3(4)	100.0(30)
현장전문가	49.5(48)	40.2(39)	10.3(10)	100.0(97)
기 타	50.0(3)	33.3(2)	16.7(1)	100.0(6)
전 체	54.4(74)	34.6(47)	11.0(15)	100.0(136)

기타 의견으로는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안, 자격검정과목 반 이상을 이수한 학생 대상, 전문대는 2학년 1학기부터, 4년제 대학은 3학년 1학기부터 등의 의견이 있었다.

(3) 현장실습시간

청소년지도사 2급의 현장실습시간에 대해서는 160시간이 47.4%, 120시간이 41.6%, 기타가 10.9%로 160시간이 120시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 유형별로는 현장 전문가의 경우에는 120시간(46.4%)을 160시간(40.2%)보다 조금 더 선호하였지만, 4년제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160시간이 67.7%로 120시간(29.0%)보다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2급 현장실습시간 의견

(단위: %(빈도))

근무기관 유형	2급 현장실습시간			전체
	160시간	120시간	기타	
전문대학교수	50.0(1)	50.0(1)	0.0(0)	100.0(2)
4년제대학교수	67.7(21)	29.0(9)	3.2(1)	100.0(31)
현장전문가	40.2(39)	46.4(45)	13.4(13)	100.0(97)
기 타	57.1(4)	28.6(2)	14.3(1)	100.0(7)
전 체	47.4(65)	41.6(57)	10.9(15)	100.0(137)

청소년지도사 3급의 현장실습시간에 대해서는 120시간이 56.1%, 120시간이 33.3%, 기타가 10.6%로 120시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 유형별로는 전문대학교수만 160시간을 더 선호하였고, 4년제 대학교수와 현장전문가들은 120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3급 현장실습시간 의견

(단위: %(빈도))

근무기관 유형	청소년육성제도론			전체
	160시간	120시간	기타	
전문대학교수	100.0(2)	0.0(0)	0.0(0)	100.0(2)
4년제대학교수	16.7(5)	73.3(22)	10.0(3)	100.0(30)
현장전문가	37.6(35)	51.6(48)	10.8(10)	100.0(93)
기 타	28.6(2)	57.1(4)	14.3(1)	100.0(7)
전 체	33.3(44)	56.1(74)	10.6(14)	100.0(132)

기타 의견으로는 2과 3급의 현장실습시간을 동일하게 운영, 3급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에는 2급에서 현장실습을 면제, 그리고 80시간(2주)부터 200시간까지 다양한 시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4) 현장실습 기관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기관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의무로 이수하는 기관(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시도센터 등)이 57.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지도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및 단체(27.0%),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7.9%), 기타(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현장실습 기관 의견

(단위: %(빈도))

근무기관 유형	현장실습 기관				전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시도센터 등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로 이수하는 기관	청소년 지도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및 기관 전체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실시	기타의견	
전문대학교수	100.0(1)	0.0(0)	0.0(0)	0.0(0)	100.0(1)
4년제대학교수	48.0(12)	36.0(9)	0.0(0)	16.0(4)	100.0(25)
현장전문가	61.7(58)	25.5(24)	8.5(8)	4.3(4)	100.0(94)
기 타	33.3(2)	16.7(1)	33.3(2)	16.7(1)	100.0(6)
전 체	57.9(73)	27.0(34)	7.9(10)	7.1(9)	100.0(126)

기타 의견으로는 청소년지도사 1급이 상주한 청소년기관, 사회복지사자격처럼 실습인정 기관으로 등록 및 신청하여 청소년단체협의회 혹은 수련시설협회에서 총괄 관리하는 방안, 과목으로 하는 경우는 청소년지도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및 기관 전체, 면접합격자에 한하는 경우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실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로 이수하는 기관’을 우선 현장실습기관으로 하되, 지역에 그러한 기관이 없거나 실습대상자의 주거지가 그러한 때에는 ‘청소년지도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및 기관 전체’까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범주화 등이 있었다.



(5) 현장실습 지도자 자격

현장실습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사 1급 소지자 또는 2급을 소지하고 3년 이상된 경력자가 71.9%, 청소년지도사 2급 소지자 이상이 20.7%, 기타가 7.4%로 대부분 청소년지도사 1급 소지자 또는 2급을 소지하고 3년 이상된 경력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현장실습 지도자의 자격에 관한 의견

(단위: %(빈도))

근무기관 유형	현장실습 지도자의 자격			전체
	청소년지도사 1급 소지자 또는 2급 소지하고 3년 이상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2급 소지자 이상	기타	
전문대학교수	50.0(1)	50.0(1)	0.0(0)	100.0(2)
4년제대학교수	82.8(24)	10.3(3)	6.9(2)	100.0(29)
현장전문가	71.1(69)	21.6(21)	7.2(7)	100.0(97)
기 타	42.9(3)	42.9(3)	14.3(1)	100.0(7)
전 체	71.9(97)	20.7(28)	7.4(10)	100.0(135)

기타 의견으로는 지방의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1급 소지자 또는 2급 소지하고 3년 이상 경력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지역이 있으므로 이를 기본 자격으로 하되, 청소년지도사 2급 소지자 이상도 포함하는 방안, 1급 소지자 중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2급 소지자 중 7년 이상 경력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자. 기타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전반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먼저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에 청소년 관련학과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현장경험만으로 필기시험을 통해 3급과 2급 자격검정에 응시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관련과목 이수자의 경우에 면접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되 2급은 필기합격자에게 부여하고 필기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 3급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또한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필기시험으로 취득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취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과 동일하게 전문대학에서도 2급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2급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2) 필기시험 면제제도

과목이수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 제도에 대해서 지도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 평생교육사와 같이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조정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에 대해서 과목수의 확장보다 과목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 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3급 청소년지도사의 실무형 과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으로 현재의 분류로는 2급과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 개선안은 2급의 경우에 총 12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대학원의 경우에 학부와 같이 12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와 같은 타 자격증을 참고하여 필수 및 선택과목수를 6-8개 과목 정도로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전문대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청소년지도사 3급과정의 검정시험과목은 5개 과목 이내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사업단의 전체 진행방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2급과정과 1급과정으로 두고 있음. 또한, 전문대학과정에서 3학점을 단위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인 만큼, 검정과목이 6개 이상의 과목으로 될 경우에 이를 전문대학 교육과정에서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4년제 대학교의 경우에도 1학년과정은 교양과목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2학년부터 과목 이수가 가능한 데 보통 5~6과목을 1학기에 진행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지도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사 과정 역시 교육과정 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 학기 당 2과목~3과목 이내로 검정과목이 편성되어야 교육과정 운영 상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4) 연수 및 보수교육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자 대상으로 80~120 시간의 연수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넘은 자는 보수교육에서 제외하고, 보수교육은 3급, 2급, 1급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현행보다 훨씬 강화된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직으로 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문화 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권과 자연권 지도사를 나누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5) 현장실습

현장실습과 관련된 의견으로는 현장실습은 2급과 3급의 역할을 규정한 후, 각각의 역할에 맞게 실습내용을 다르게 구성해야 하며, 합숙훈련에 대한 인정, 현장실습비의 최소화를 통한 이수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 교육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운영, 현장실습기관의 경우에 실습시간 대체 조건으로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일정 연수를 이수케 하는 방안, 그리고 현장실습 기관의 경우에 전문특기 인정범위를 마련 후 자격을 취득케 하는 방안 등 이 제안되었다.

(6) 면접제도

면접제도와 관련해서는 문제은행식 출제로 지역 간, 면접관 간에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지도사 자격 면접시에 질문 내용의 통일, 일정 학력과 경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를 면접관으로 배치함으로써 면접관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안)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선(안)

가. 개정 방향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의 개정은 최근 자격제도에서 국가적·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한다.

-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의 내실화를 통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 ②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요구 반영
- ③ 청소년 실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습득에 필요한 과목 선정
- ④ 기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중 유사과목의 통합 및 조정
- ⑤ 2,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의 차별화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의 개선(안)은 현행 1, 2, 3급 청소년지도사 운영에서 과목을 조정하는 1안과 2급 청소년지도사와 3급 청소년지도사를 2급으로 통합하여 1,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을 제안하는 2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선(1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선 1안은 기존 1, 2, 3급 체제를 유지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검정과목을 2, 3급의 경우에 공통필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구성하고, 1급의 경우에는 필수과목으로 구성·운영하는 안이다. 1급 5개 과목, 2급 10개 과목, 3급 9개 과목으로 구성하며, 필기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청소년현장실습 제외하고, 대학원생의 경우에 선택과목을 제외한다.



구분	3급 자격검정과목	2급 자격검정과목	1급 자격검정과목
선택과목 (1과목)	청소년생활지도 학교교육의 이해 청소년자원봉사론	청소년상담 사회조사방법론 청소년교류론 청소년교육론	
필수과목 (4~5과목)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의 이해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청소년복지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연구방법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론
공통필수과목 (4과목)	청소년지도론 청소년관련 법·제도론	청소년활동과 안전 청소년현장실습	

공통필수과목(4개 과목)은 2, 3급 청소년지도사가 현장 활동 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과목으로 구성으로 구성한다. 청소년지도론, 청소년활동과 안전, 청소년 관련 법·제도론, 청소년 현장실습의 5개 과목이며, 기존의 청소년지도자론과 청소년지도방법론은 청소년지도론으로 통합·조정한다.

필수과목은 각 급별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1, 2, 3급간 차별화된 과목으로 구성한다. 1급 과목(5개 과목)은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연구방법,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론으로 하며, 2급 과목(5개 과목)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청소년복지로 하고, 3급 과목(4개 과목) :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의 이해, 청소년 문제와 보호로 한다. 2, 3급의 경우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가 유사한 것을 고려하여 유사과목을 선정하였으나 과목간 수준을 달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2, 3급간 차별화된 교수요목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목은 2, 3급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구성하며,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게 한다. 2급 과목(4개 과목)은 청소년상담, 사회조사방법론, 청소년교류론, 청소년교육론으로 하며, 3급 과목(3개 과목)은 청소년생활지도, 학교교육의 이해, 청소년자원봉사론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선(2안)

기존의 청소년지도사 3급을 폐지하고 1, 2, 3급의 운영체계를 1, 2급의 운영체계로 변경하는 안이다. 이 경우에 2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과목은 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구성하고, 1급의 경우에는 필수과목으로 구성·운영한다.

1급 5개 과목, 2급 10개 과목으로 구성하며, 필기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청소년현장실습을 제외하고,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선택과목을 제외한다. 이 안에서는 청소년지도사 2, 3급 간의 현장 직무능력에 뚜렷한 차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 3급 자격검정과목을 분리하는 것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구분	2급 자격검정과목	1급 자격검정과목
선택과목 (1과목)	청소년상담 사회조사방법론 청소년교류론 청소년교육론 청소년생활지도 청소년자원봉사론	
필수과목 (4~5과목)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청소년복지 청소년지도론 청소년활동과 안전 청소년관련 법·제도론 청소년현장실습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연구방법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론

필수과목은 1, 2급 청소년지도사가 각 급별로 현장 직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과목으로 구성한다. 1급 과목은 5개 과목이며,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연구방법,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론이 포함된다. 2급 과목은 9개 과목으로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청소년복지, 청소년지도론, 청소년활동과 안전, 청소년 관련 법·제도론, 청소년현장실습이 포함된다.



선택과목은 2급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구성하며,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게 한다. 선택과목에는 청소년상담, 사회조사방법론, 청소년교류론, 청소년교육론, 청소년생활지도, 청소년자원봉사론이 포함된다.

2.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운영(안)

가. 현장실습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이수자의 청소년활동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응능력이 부족하여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이수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현장실습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현장에 대한 이해와 현장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현장실습 대상

현장실습 대상은 2,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이수자로 하며, 필기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현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실습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현장실습 시간

현장실습시간은 현재와 같이 청소년지도사 급수를 1, 2, 3급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2급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으로 160시간 이상이며, 3급은 최소 3주간(최소 15일 이상)으로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3급을 폐지하고 1, 2급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2급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으로 160시간 이상을 실시한다.

라. 현장실습 주요 내용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지도사의 윤리 및 정체성 교육
- ② 청소년정책, 청소년기관 및 사업에 대한 이해

- ③ 조직구성원간 갈등 해결 및 의사소통법 등 대인관계 기술의 이해와 적용
- ④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의 실제(집단활동지도, 자치활동지도, 현장 대처능력 기술,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및 평가, 대상별 청소년활동 지도 실습, 청소년 생활지도 실습 등)
- ⑤ 청소년기관 행정문서 작성 및 관리의 실제(교육활동 장비 및 기자재 운영/관리,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운영/관리, 프리젠테이션 작성 실습, 설문분석 실습 등 포함)

마. 현장실습기관 및 현장 청소년지도사 자격

현장실습기관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시도센터 등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의무로 이수하는 기관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은 청소년지도사 1급 소지자 또는 2급을 소지하고 3년 이상된 경력자로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이하 “활동진흥원등”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바. 과목 운영 및 평가

현장실습은 학기 중 실습과 방학 중 실습으로 구성하며, 기관의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현장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출석, 수업참여도, 현장점검평가 등으로 최종성적을 산출한다.

3. 기타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안)

가. 필기시험 면제 대상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이수 자의 필기시험 면제 대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할 것을 검토한다. 평생교육사와 같이 과목당 3학점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를 면제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청소년지도사 급수 조정

현장 직무에서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청소년지도사 급수를 현행 1, 2, 3급에서 2, 3급을 통합하여 1, 2급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현행 1, 2, 3급 체제에서 1, 2급으로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상담협회 (2013). 2013 국가직무능력표준 표준 및 활용 패키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블로그). <http://upgrade-u.tistory.com/2953?top3> 에서 2015년 1월 12일
인출.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NCS 학술개발 매뉴얼.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NCS 학습모듈 개발 매뉴얼.
- 모상현, 이진숙 (2014). 청소년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민경 (2014). 청소년지도 전문 인력 양성과 활성화 방안, 2014년 청소년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
자료집(2014. 5. 29). pp. 15~38.
-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6. 28. 의원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A3V0U6P2K8Q1T6F0U0P0S8H7N3B2
- 조아미, 박정배, 이진숙 (2012). 2012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함병수 외 (2004).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황진구 (2012).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교재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 40.
- 자격기본법.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지정토론 I

【토론 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안)에 관한 소견
이 민 희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토론 2】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에 관한 토론
김 정 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토론 3】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하여
연 규 철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영지원실장)

토론 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안)에 관한 소견

이 민 희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1. 공(公)과 사(私)

금번 공개토론회의 주제는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제도 개선이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는 국가가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 국가제도이다. 이를 개선하는 것은 현행 국가의 정책을 바꾸는 일이다. 우리는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바뀔 때마다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고, 심지어는 거리로 나아가 자신들의 주장을 외쳐대며 공권력과 몸싸움을 하는 일상을 여러 차례 겪어왔다. 왜 그럴까? 이러한 혼란과 소요의 대부분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되며,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기구이다. 따라서 국가의 공공성은 어느 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만일 국가가 공공성을 지키려 한다면 정책의제의 형성이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국가가 수립한 정책이 정책결정자 개인의 이해나 그를 위협하거나 매수하여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외부 집단들의 이해에 따라 공공성을 잃고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다. 한 국가와 사회가 도덕성이 부패하고 가치가 혼란스러울수록 국가 정책의 이념과 목적이 불투명해지고, 소수 권력집단의 이익에 끌려 다니기 쉽다. 21세기 현 대한민국 사회가 혹 그렇지 아니한가?

청소년지도사? 이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을까? 국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없고, 정작 이 제도의 수혜자인 청소년들조차도 청소년지도사가 자신들을 지도하는 국가가 공인한 자격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동일한 대상인 학생



청소년들을 학교 내에서는 교사가 지도하지만, 학교 밖 생활 속에서 이들을 지도하는 자들이 청소년지도사라는 것을 아는 교사나 학부모도 드물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잘 모르는 만큼 청소년지도사는 그 의미와 가치가 작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적어도 ‘국가의 미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다’는 국가의 구호가 거짓이 아니라면, 오히려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의 덕성과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위해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서의 실습과 경험을 쌓아 국가로부터 공인된 청소년지도사는 현행 교육제도에서 편향된 입시위주의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사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3년부터 청소년지도사가 국가 제도로 양성되어온 이후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배출되었고, 2013년 기준으로 38개 고등교육과정의 전문대학과 대학교의 학부, 석사, 박사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학과들이 설치되어 있다(청소년백서, 2013). 특히, 21세기에 정보사회에 들어와 사이버대학들이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에는 연 평균 3,000명이 넘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매년 양성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의 성장으로 한국의 국정 지표와 과제는 ‘복지’에 어느 때보다 지출을 많이 하여 청소년 영역에도 광의의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관련 시설, 기관,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들의 인력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청년실업 문제와 심한 대학입학 경쟁으로 인한 학교폭력, 청소년자살 등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에서의 청소년지도사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 영역에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시장 형성에 따른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005년 자격제도에서 필기시험 면제 제도가 도입될 때에도 대학의 청소년관련 학과들의 이기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토론자가 장황하게 사실을 늘어놓았지만 제도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현재 청소년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본 토론자를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각자의 사적인 이해를 내려놓고 다 함께 공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진실된 마음을 모으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우리의 미래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가장 잘 지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Ⅱ. 개정 방향의 허(虛)와 실(實)

새로이 마련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선(안)의 개정 방향은 대체로 무난하다고 평할 수 있다. 특히,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요구를 반영하고 실무 현장에 필요한 과목 선정, 기존 검정 유사과목의 통합 및 조정, 2,3급 검정과목의 차별화는 그 동안의 목소리들을 수렴한다면 수긍이 가는 발전적인 개정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 10년 만에 나온 개선(안)에서 그 동안 늘 논란이 되었던 필기시험의 부활과 면접시험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개정 방향의 설정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과 생각을 갖게 한다. 이 두 쟁점들에 관한 토론자의 소견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기시험의 부활은 청소년지도사의 수요와 공급의 조정, 그리고 양질의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이 제도개선의 가장 적기이다. 현재 청소년지도사는 3만 명이 조금 넘게 배출되었다.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시설, 기관, 단체 들은 2012년 기준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753개, 청소년단체 73개(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단체), 청소년쉼터 103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3개, 기타 청소년관련 이용시설과 민간 청소년관련 기관 등을 감안할 때에 대체로 약 1,200개 내외이다. 이렇게 볼 때에 수요인력에 비해 청소년지도사가 적지 않게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4년제 청소년전공 학과를 졸업하고도 관련 시설, 기관, 단체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허다하다는 것도 현재의 지나친 공급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청소년지도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2008년 필기시험 면제가 도입된 해에 배출된 지도사는 바로 전년도인 2007년 909명에서 2,744명으로 3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3,000명이 넘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많은 수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에는 사이버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해 필기시험 면제 과목, 특히 청소년지도사 2급 과정 8과목만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과를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사이버대학의 교육과정이 기존 대학들의 교육과정보다 질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사이버대학들은 다른 자격증 취득과 연계해서 자격검정 과목만을 개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청소년관련 정책 및 제도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어서 양질의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다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면접관들이 사이버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이 필기시험 부활의 적기라는 것은 매년 3,000명이 넘게 공급되는 청소년 지도사의 수를 감안할 때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에는 제도의 개선이 빠를수록 좋다는 의미이다.

둘째, 형식적인 현행 면접제도가 폐지되고, 연수과정이 연수 및 면접 과정으로 바뀌어 청소년 지도사의 자세와 태도, 전문성들이 이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자격의 적격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위에서 서술한 필기시험의 부활을 전제로 하는 제안이지만, 필기시험이 부활되지 않더라도 현행 면접제도는 심층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요식적, 형식적이며, 면접관의 주관성 및 짧은 면접시간, 면접문제의 유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모상현·이진숙, 2014: 80~81)라 폐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개선된 연수 및 면접 과정에서 불합격된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는 연수 및 면접 과정에 참가한 일정 비용을 반환해주도록 하는 것도 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III. 자격검정과목 개선 1안과 2안

자격검정과목 개선에 관한 1안과 2안은 개정 방향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실무 현장과 직무 능력에 필요한 과목의 선정과 유사과목의 통합 및 조정, 그리고 2, 3급 과목의 차별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1안과 2안의 큰 차이점은 무엇보다 2안에서는 기존의 3급과 2급을 통합하여 자격 등급을 1, 2급으로 단순화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과목들에 관한 논의보다 앞서 기존의 자격등급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1, 2급으로 조정하느냐가 무엇보다 첫 번째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토론자의 의견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에서 2급과 3급의 과목이수의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거의 차별이 없으므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맞다. 현행 응시자격 기준을 검정과목과 관련하여 살펴보아도 2급은 대학졸업자에게, 3급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해당되는 것과 3급은 2급 검정과목에서 청소년복지 1과목이 제외된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 이는 결국 학벌사회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학력의 차이가 연루된 것뿐이지 교육적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어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새로 마련된 1안과 2안의 2, 3급 검정과목들을 비교해보아도 차이가 크게 없으므로

2, 3급을 통합하는 2안이 더 타당하다. 새로 마련된 1안의 선택과목들 중에서 선택되는 과목은 2급과 3급 모두 각각 1과목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1안의 3급 검정과목에서 청소년복지가 기존 제도처럼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결국 새로운 1안도 2, 3급에서 2과목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8개 과목은 과목의 주제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안에서도 2, 3급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실제 실무 현장에 있어서도 2, 3급의 과목들을 이론적으로 이수했다는 전제하에서 경력의 년 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2, 3급의 직무차이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3급을 폐지하고 1, 2급 자격등급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년제 대학교가 전문대학에 비해 1~2년 정도 전공과목에 대하여 더 많은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현장에서 직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결국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청소년 시설 및 기관들은 응모자의 학벌이 아닌 개인의 활동 경력과 인성 등 다양한 능력을 보고 선택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1, 2급 자격관련 세부적인 과목의 필수, 선택 분류와 과목 수 및 과목의 선택에 관하여 토론자의 소견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현장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당연하고도 매우 필요한 조정이다. 그 동안 현장실습을 필수로 하지 않아서 청소년지도사들의 역량과 자격을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에 비해 스스로 비하시킨 면이 있어 왔는데 이를 늦게나마 바로잡은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필기시험이 부활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자격검정 응시자들은 현장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기존의 1급 청소년지도자론과 2급의 청소년지도방법론을 2급 과목 청소년지도론으로 통합·조정한 것은 매우 합당한 개선이다. 두 과목은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자의 리더십(leadership)에는 지도의 방법도 내재하여 있다고 볼 수 있기에 통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법령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청소년관련 법·제도 과목의 기존과 같이 채택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에 무지하다면 청소년을 지도할 자격이 부여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기존 2급의 과목명이 ‘청소년육성제도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법에 더 방점을 두는 것으로 하여 ‘청소년관련 법·제도(론)’으로 개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기존의 2급 과목이던 ‘청소년 문제와 보호’를 ‘청소년문제’ 과목으로 개명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문제’의 실질적 내용인 ‘청소년환경’ 과목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이 개명되어 채택하려는 ‘청소년문제’ 과목의 교과내용은 ‘청소년심리’와 ‘청소년문화’ 과목과도 중첩되는 내용이 많고, 기존의 ‘청소년 문제와 보호’ 과목이 궁극적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익환경을 늘려 문제해결을 피하려는 교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문제’ 과목의 채택보다는 ‘청소년환경(론)’으로 과목을 대체하여 급변하는 청소년환경에 청소년지도사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과목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청소년활동 영역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 후 청소년지도사 안전에 관한 내용을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안된 ‘청소년활동과 안전’이라는 과목명과 교과목 내용의 개선이 적당하다. 최근 있었던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에서의 성추행 사건, 해병대캠프 사건, 세월호 사건 등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에 안전에 관한 독립된 과목의 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었는데 이는 평소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문화 때문에 야기된 결과이므로 안전을 주제로 급히 독립된 검정과목이 채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와 국민의 분위기와 정서를 고려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청소년활동 영역에 안전에 관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교과목으로 ‘청소년활동과 안전’의 과목명이 채택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무리가 없는 선택이다.

여섯째, 2안에서 채택된 2급의 선택과목들 중에서 ‘사회조사방법론’과 내용이 모호한 ‘청소년 교육론’ 과목을 제외하고 4과목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선택과목들을 개설했을 때에 ‘사회조사방법론’을 선택하는 자격검정 응시자는 거의 없을 것이 확실하고 1급 과목 ‘청소년 연구방법’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간단한 조사방법도 함께 다룰 수 있으므로 2급의 선택과목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또한 ‘청소년교육론’은 청소년기본법 상의 청소년육성의 이념을 고려할 때에 어떠한 내용으로 교과내용이 구성되는지 그 교육내용의 범위가 크고 모호하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1급의 필수과목에서 ‘청소년정책론’은 반드시 넣어야 하며,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은 필요한 교과내용이기는 하지만 교과명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할 것이다.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가 국가의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무지하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1급의 ‘청소년정책’ 과목이 2급의 ‘청소년관련 법·제도’ 과목과 중첩되는 것을 우려하는 생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두 과목은 엄밀히 보면 매우 다른 과목이라 할 수 있다. 2급의 ‘청소년관련 법·제도’ 과

목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소년과 관련된 국가의 모든 제반 법령들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하게 교수되는 과목이라 할 수 있고, ‘청소년정책’은 다른 국가정책들과의 관련 속에서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집행, 평가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청소년정책을 집행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 국제적인 청소년정책의 동향은 어떠한가, 현행 청소년정책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미래 국가의 청소년정책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 등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청소년에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국가정책을 배우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의 업무가 학교와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들과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필요에 의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과목이 교수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 명이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보다는 ‘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와 지역사회’ 또는 ‘청소년 육성과 지역사회’ 등의 교과목 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Ⅳ. 현장실습 운영(안)과 기타 안건

청소년지도사의 현장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록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개선이다. 현장의 실습시간에 관하여는 2,3급이 통합되어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토론자도 연구자가 제안한 것과 같이 2급에서 최소 4주간(20일 이상)으로 160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지지한다. 청소년지도사는 현장의 경험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단지 배우는 과정에서 학업의 부담으로 인해 장시간 실습을 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간 수를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160시간 이상이 가장 적절한 최소시간으로 상정될 수 있다. 단지 현장실습에 관해서는 연구자가 제안한 실습의 주요내용, 자격, 운영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실습자나 실습지도 기관에 해당되는 정부의 지침이 세부적으로 주어져서 공통된 현장실습의 교육과정이 이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타 안건으로 제안된 필기시험 면제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토론자가 앞서 피력한 것과 같이 필기시험이 부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과도기적으로 면제 제도를 유지한다면 제안된 과목당 3학점 평균 80점 이상 취득자만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제안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현행 교육부가 대학생들의 학업평가에 있어 잘못 시행하고 있는 상대평가 제도와 관



련이 있다. 한편, 교과목 이론에서 75점을 맞은 청소년지도 전공 학생이 80점 이상 맞은 학생보다 현장에서 청소년을 더 잘 지도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연구자가 제안한 개선안은 금번 제도를 개선한 이후 수요와 공급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후에 도입되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모상현·이진숙(2014). 청소년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토론 2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에 관한 토론

김 정 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1. 들어가는말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지도 전문 지식과 기술을 청소년기본법 제 20 조 등에 의거한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제도>로 검증 받은 후, 개인적 성장을 계속하여 청소년에게 직업모델로서의 위상을 제시하는 전문직이다.

청소년지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정부는 청소년지도사란 전문직을 만들고, 이들이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에 임용되어 청소년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관련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와 대학에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중 시험에 합격한 자가 취득할 수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청소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를 적절하게 지도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이나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기능 및 전문성 확립에 관한 문제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에 맞는 표준교과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요구된다.

이에 맞추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학습מוד의 개발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과 교수요목의 조정이 요청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공개보고회는 청소년관련학과, 청소년단체, 청소년기관 및 수련시설 지도자 및 예비청소년지도사들에게 의미있는 자격제도 연구 보고회라고 생각되어진다.



II. 본론

청소년지도사가 누구인가를 규정함에 있어 흔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지난 1993년부터 실시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어 양성하고 있는 ‘1~3급 청소년지도사’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것이다.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하여 급수 간의 역할을 차별화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급수에 따른 역할을 차이보다는 청소년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즉,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의 취득만으로 현장의 요구에 맞춘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도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지도사 이외에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자격 과정에 참여하여 관련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향후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이 활성화 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결국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의 위상이 약화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은 현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은 2, 3급의 경우에 청소년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과목이 동일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급 과목인 청소년정책론과 2,3급 과목인 청소년육성제론 등은 유사 과목으로 인정되고 있다(모상현, 이진숙, 2014). 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은 1, 2, 3급간 검정과목의 중복성과 모호성, 그리고 현장에서의 청소년지도사의 직무와 역할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12년에 학계전문가, 정책 및 현장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의 개선을 위해서 ‘현장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운영’, ‘자격검정과목의 중복 최소화 기본과목’, ‘공통과목, 선택과목 등의 구분’, ‘청소년지도사 자격급수에 따른 역할과 직무를 고려하여 자격검정과목을 달리하여 운영’ 등을 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조아미 외, 2012).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청소년자격제도 개선방안연구(모상현외 2014)에서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응답”에서 ‘있다(77.7%)’가 국가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응답에서는 ‘필기시험의 부활(29.7%)’과 ‘현장실습 의무화(23.8%)’, ‘필기시험 면제 기준 강화(14.9%)’, ‘자격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체계화(11.9%)’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은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기능 및 전문성 확립에 관한 문제로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에 맞는 표준교과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발표자께서 비교한 청소년지도사 및 유사 자격제도 비교한 부분에 보육교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지도사 및 유사 자격제도 비교〉

구분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이수 과목	·1급:필수 5과목 ·2급:필수 8과목 ·3급:필수 7과목	·구체적 규정 없음	·대학원 - 필수 6과목이상 - 선택 2과목이상 ·대학 - 필수 10과목이상 - 선택 4과목이상	·필수 5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	·2급:17과목
시험 전형	·검정과목전공 이수자:면접 ·현장경력자 : 필기, 면접 ·1급응시자:필기	·필기, 면접	·1급:필기 ·2,3급:무시험	·무시험	·무시험
검정 과목	·1급:필수 5과목 ·2급:필수 8과목 ·3급:필수 7과목	·1급:필수3, 선택2 ·2급:필수4, 선택2 ·3급:필수5, 선택1	·1급:필수 3과목	·없음	·없음
현장 실습	·없음	·없음	·120시간이상	·4주(160시간)	·4주(160시간)
연수	·30시간	·100시간	·없음	·없음	·없음

유사자격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지도사는 첫째, 유사한 자격제도에 있어서 이수과목이 부족하거나 유사하다

둘째, 현장실습이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자격제도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사는 현장실습 의무화가 요구된다, 현장실습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직무 위주로 이루어 진다면 청소년지도사의 현장실무중심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학교마다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발표자께서 보고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의견조사 결과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자격 검정과목, 현장실습 의무화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안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선은 2안에 동의한다. 기존의 청소년지도사 3급을 폐지하고 1, 2, 3급의 운영체계를 1, 2급의 운영체계로 변경하는 안이다.

III. 나가기

현재의 청소년관련학과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일관성이 없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도 과목마다 내용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교육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었다. 전문가 집단별로 자격검정과목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격검정과목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내용 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과 관련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교육과정의 체계화를 이루어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토론 3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하여

연 규 철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영지원실장)

청소년육성재단에서 2015년도 제1차 신규직원채용절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일반직에 대한 채용서류를 접수받았다. 많은 청소년지도사들이 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들 대부분은 14년도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을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계획 중에 있는 예비청소년지도사들 그리고 자격취득 후 1~2년차의 경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올해는 특히 청소년지도직 분야의 지원률이 15:1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의 취업문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것과 재단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채용서류를 제출한 이들이 사전에 청소년수련시설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었거나 재단의 실습과정이나 인턴과정을 경험하였다면 선발에 대한 검증절차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차원에서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자격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학교, 학생, 연수기관)들을 수렴하였고 새로운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청소년활동 현장의 바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과목은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지도에 필요한 과목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연구결과에서는 1안)은 1, 2, 3급의 기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택 과목(전문성개발을 위한 선택이수)과 필수과목(각급별로 필수적으로 이수), 공통필수과목(현장 활동시 기본적인 필요과목)으로 구분하고 2안)은 기존의 3단계 자격과정을 1, 2급단계로 줄이



면서 2급과정은 필수(현장직무 필요과목)와 선택과목(전문성 개발과목)으로 1급과정은 필수과목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제시된 두 개의 개선안중 우선 새롭게 추가된 청소년활동과 안전과 청소년현장실습과목은 모두 현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지만 검정과목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활동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과목을 준비할 것이며 시설안전의 경우 기존의 시설관리책임자들이 전문성(건축, 설비, 전기, 소방 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난이도나 현장접근이 어려운 영역일수 있다. 또한 대상자 중심의 안전교육의 경우에는 인명구조나 심폐소생술 중심의 교육운영이 이루어진다면 검정과목 보다는 지도자자격 연수과정 속에서 위 두 과목들이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공통필수과목이지만 검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수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위 두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교육이수를 할 경우에 한하여 검정자격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2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3급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격취득 후 청소년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란 것이다. 일반적인 생활권중심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자격기준을 ‘2급취득자 또는 3급취득후 1년의 경력을 가진자’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특화시설에서는 3급청소년지도사1인~2인을 두어야 하며 유스호스텔,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1인이상 두게 되어 있지만 2급 청소년지도사를 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다. 또한 자격검정과목에서도 기존 자격검정과목에서도 3급 자격검정과목 7과목 2급 자격검정과목은 8과목으로 과목별 차이가 없으며 현장에서의 직무능력에서도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검정과목 개선(2안)의 경우 청소년활동과 안전, 청소년현장실습과목을 필수이수과목으로 운영하면서 검정과목에서는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2) 현장실습과정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비청소년지도사의 현장실습에 대한 필요성은 대학이나 청소년활동 현장이나 모두 중요하다고 공감하는 부분으로 현장실습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은 (활동공간, 실습지도를 위한 청소년지도사, 운영체계 등) 준비되어있는가 검토해봐야 한다. 청소년 지도실습이 또 다른 형태의 대체근로나 실습지도에 대한 현장지도자들의 업무과중으로 부담스러운

제도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활동공간(수요에 대한 적정한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나 실습지도자(검증된 청소년지도사와 실습전담지도사에 대한 교육체계마련), 운영체계(실습운영기관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blue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blue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blue lines.

